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대상 확대 필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48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 확대 필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5.

다. 회부연월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 확대 필요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서 인식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하는 대상인 불법촬영물 등에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등).

[illegible]

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¹⁾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등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2조의5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의 대상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

○ 개정안은 조치의무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의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²⁾, 채팅앱 등을 활용한 성매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³⁾을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거래와 성매매의 증가는 해당 플랫폼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류나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위험을 높이며, 이로 인해 마약 중독 및 미성년자 성착취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또한,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동 개정안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2) 뉴스1, “'이렇게 구매가 쉽다고?'...온라인 불법 마약 유통 5년새 8배 급증”, 2024. 9. 23.

3) 세계일보, “랜덤 채팅앱서 음란·성매매 정보 급증... 4년만에 4.5배 증가”, 2024. 10. 24.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조문은 타 법에서 동일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범죄’, ‘교사’, ‘방조’의 의미를 고려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 의해 그 범죄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한 바 있어, 형벌 규정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X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와 성매매는 경찰 및 단속 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로 은어(암호화된 표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러한 은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인 경우가 많아, 이를 규제할 경우 일반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져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에서는 마약류 거래와 성매매와 관련된 은어로 ‘허브’, ‘아이스’, ‘캔디’ (마약류)⁵⁾와 ‘셔츠룸’, ‘컨디션’, ‘올캠’ (성매매)⁶⁾ 등과 같이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은어로 사용

4)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헌집24-1, 228]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범죄’, ‘교사’, ‘방조’의 의미를 고려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 의해 그 범죄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나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법률신문, “[이슈 인사이드] 캔디, 아이스, 허브가 ‘마약 은어’라고?”, 2023. 8. 9.

6) 조선일보, “‘셔츠룸’도 몰라요? ㅋㅋ 경찰이구나”...신종 은어에 성매매 단속 경찰 찔찔매”,

되고 있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이러한 용어까지 규제할 경우 일상적인 거래나 대화도 규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또한, 마약류·성매매 등 불법 정보는 주로 일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문자 형태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현행 불법촬영물 등에 적용되는 기술인 영상이나 이미지 위주의 규제 기술이 다른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2020년부터 정부에서 개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방지하는 기술인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등록된 DB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 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⁷⁾에 해당하여, 해당 기술을 통해 문자 형태의 불법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음.

- 특히, 일상 용어의 문자 형태를 사용하여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09. 7. 25.

7)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2024. 1.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조항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여 규제 기술도 동영상·이미지에 대한 규제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영상 및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조항을 그대로 일반적인 문자 등으로 유통⁸⁾되는 다른 불법 정보에도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조항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불법촬영물 원본의 유통방지는 물론, 동일·유사한 정보의 재유통을 방지하

8) 마약류, 성매매 등의 불법 정보의 경우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문자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며,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정보 등의 정보는 영상 또는 이미지가 아닌 대부분 문자 형태로 유통되는 등 상이한 정보 속성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적 조치의 활용이 불가능한 바,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우려가 있으며, 사적검열의 우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 위헌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줄임말 또는 은어 등으로 유통되는 불법 정보 등의 경우 범죄 정보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상 조치의무 이행이 어려우며, 현행법 상 범죄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 개정안으로 인해서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간의 법률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플랫폼 산업 위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온라인 상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매매나 마약 거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조치의무사업 대상에 일반 불법 정보

의 유통 방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문자 형태로 유통되는 성매매나 마약류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규제가 영상이나 이미지와 달리 문자 형태의 불법 정보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